

스카이가이드 채널 프로그램 제작 계약 특수조건

제 1 조 (영상물에 관한 사항)

제작 내용 용	프로그램 명	skyGuide 영화프로그램 <무비앤라이프, 카페스카이 TV한스푼>		
		60분물(무비앤라이프)		
	방송 시간	15분물(카페스카이 TV한스푼)	제작 편수	연간 00편
		※ 양사 협의 하에 45~60분으로 변경 가능		
계약 기간		2021.05.01~2022.4.30 (1년)		
납품 내역		1) 제작 영상물 일체: 파일납품 (1920*1080) 2) 영상물 시놉시스 및 홍보물 일체		
납품 일자		영상물 본 방송 예정일로 부터 5일 전 까지		
권리 귀속		특약이 없는 한, 일반조건 제10조에 명기된 모든 권리 "갑"에게 귀속		
제작 비	금액	편당 : 원정 (₩,부가세 별도) [총액: 원정 (₩,부가세 별도)]		
	지불 방법	특약이 없는 한, "을"이 "갑"에게 영상물을 납품하여 "갑"의 검수 완료 후 납품완료확인서가 승인된 당해 방송분에 대하여 승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에 "을"이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하여 "을"에게 지급한다.		
※"을"이 제작해야 할 영상물 리스트				

위 제작 영상물 상세 품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

본 계약은 제작 수량 보장없는 단가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추정 금액임

제 2 조 (납품 기일)

- ① "을"은 영상물의 제작을 완료한 후 본 특수조건계약서 제1조 납품 일자까지 "갑"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특수조건에 표기된 납품 내역 및 납품 일자를 변경 또는 유예할 수 없다.

제 3 조 (검수)

- ① "을"은 영상물의 납품 시 "갑"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, 검수 후 "갑"의 승인을 득해야 영상물의 최종 납품이 완료 된다.
- ② "갑"이 검수 후 "을"에게 영상물의 수정 등을 요구할 경우, "을"은 "갑"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하고 "갑"에게 재 검수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. 다만,
- ② 재 검수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"을"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납품한 영상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부족하여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"갑"은 납품 및 제작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"갑"이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영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"을"이 부담한다. 단, 명백하게 "갑"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⑤ "을"이 영상물을 납품한 후 2일 이내에 "갑"이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, 영상물은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하며, <납품완료확인서>를 승인한다.

제 4 조 (제작비 및 지급)

- ① 본 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"갑"은 본 계약에 표기된 제작비(출연료 일체 포함)를 제 1 조의 지불 방법에 따라 "을"에게 지급한다.
- ② 본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별도의 지불 방법을 정한 경우 "갑"은 영상물의 납품을 보장받기 위하여 표기된 제작비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을 "을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③ "갑"의 요구로 제작방식이나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거나, "갑"의 편성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이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.
- ④ 제작비는 실 제작에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치 않은 금액은 회수될 수 있다.

제 5 조 (제작비 차감 및 계약해지)

- ① "갑"은 "을"이 본 특수조건 제 1 조의 영상물의 방송시간을 '을'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, 방송시간 대비 과부족시간 비율만큼 제작비에서 차감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"갑"의 동의 없이 제작비를 지원받거나, 제작비의 산출 근거가 되는 <제작비 견적서>상의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아니하여 영상물의 품질이나 완성도가 떨어진 경우 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③ "을"이 "갑"에게 영상물의 납품을 지체하는 경우, "을"은 그 지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납품이 지체된 영상물에 대하여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할 제작비에 연 [20(이십)]%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원을 "갑"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.
- ④ "갑"은 "을"이 납품한 영상물이 "갑"의 방송 편성 제작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영상물 내용이 방송불가 수준일 시 "을"에게 지급한 제작비를 회수한다 (최소 출연료 지급 예외).